

# **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**

2017. 5. 15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5.8. 이학래 의원 외 5명

나. 회부일자 : 2017.5.8.

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5.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
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음주청정지역 지정,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 
계획 수립과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2)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,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한 사

항(안 제5조)

- 3)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4)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홍보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5)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위촉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6)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,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조례안은 2017년 5월8일 이학래 의원의 대표발의 및 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당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,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,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며,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,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· 홍보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되어 있음.

○ 최근 5년간(‘11~‘15년) 32,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,450명이 사망하고,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원(2015년 도로교통공단, 교통사고 통계분석)에 달하고 있으며, 질병 치료비, 생산성 감소, 사망에 따른 손실,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 한 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9조4천524억원(2016년 건강정책연구원)으로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. 특히 10대 사인 중 심장질환, 뇌혈관 질환, 간질환은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.

○ 우리구민의 경우 2016년 성인남녀 연간 음주율은 79.7%로 전년 대비 0.4% 감소하였고, 월간 음주율은 62.5%로 전년 대비 0.1%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월간 음주율인 61.5%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, 2016년 고위험 음주율은 12.2%이고, 연령별로는 40대가 14.3%로 가장 높았음. 특히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7.2%, 여학생 12.5%(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)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○ 따라서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,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